

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

2025. 11.

지식재산처
(지식재산정보정책과)

법제처 심사 前

1. 개정이유

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의사자(유가족 포함) 및 의상자(유가족 포함)를 포함, 한시적 감면규정의 기한 연장여부 반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 범위 확대

- 적극행정 일환으로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의사자(유가족 포함) 및 의상자(유가족 포함)를 포함하여 면제대상자 범위확대

나. 감면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연장 검토

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의 일몰도래('26.2.28)에 따른 연장여부 검토
- 특허권 등 설정등록 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(등록)증을 수령할 경우 납부할 금액의 1만원 감면 제도('26.12.31)의 연장여부 검토

다.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

-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거절에 따른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시 지정상품에 추가에 부과되는 수수료 관련조항 명확화
- 상표 당사자계 심판(등록취소심판·무효심판, 권리범위확인심판 등) 청구 시 지정상품에 추가에 부과되는 수수료 관련조항 명확화
- 전자납부대행기관의 지정·운영, 전자납부 대행수수료 등 특허수수료 납부수단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'25. 12. 12. ~ '26. 1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가목1) 단서 및 같은 호 나목1) 단서 중 “가산한다”를 각각 “가산하되,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초과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가산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.

제8조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후단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“인터넷 지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거나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현금으로”를 “다음 각 호의 지급수단 중 어느 하나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3항 중 “제12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”를 “제1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지급수단 중 어느 하나로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현금(별지 제1호의2 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납부)
 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8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기관 중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
- 가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

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
따른 통신과금서비스

다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
계좌이체

3.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
취급하는 금융회사 중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기관이 제공하는 가상계좌

4.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
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
또는 인터넷 지로

⑳ 제12항제2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기관의 지정·운영, 납부 대행
수수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.

별표 4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3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사상 대상자, 그 유족 및 가족	출원료, 심사청구료, 최초 3년분의 특허료·등록료 (권리유형별·절차별 각각 연간 5건)
--	--

별표 6 제3호의 감면기간란 중 “2026년”을 “2029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) ① · ② (생 략)	제5조(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「상표법」 제78조에 따른 심 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----- ----- -----.
1.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: 다 음 각 목의 금액. 다만,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 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.	1. ----- -----. ----- -----.
가.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 출하는 경우	가. ----- -----
1)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 마다 24만원. 다만, 심판 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 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<u>가산</u> <u>한다</u> .	1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가산</u> <u>하되, 국제상표등록출원의</u> <u>거절결정불복심판에는 가산</u> <u>하지 아니한다</u> .
2) (생 략)	2) (현행과 같음)
나.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	나. -----

1) -----

----- 가산
하되, 국제상표등록출원의
거절결정불복심판에는 가산
하지 아니한다.

2)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. 다만, 초과되는 지정
상품에 대한 가산료는 부과되지
아니한다.

4. ~ 11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납부방법 등) ① ~ ④ (현행과)

⑤특허료·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,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허증,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(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)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
⑦ 상표권의 설정등록료,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상표법」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

1. 상표권의 설정등록료(「상표법」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

같음)

⑤-----

-----.

2029년 12월 31일-----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.

-----.

1. -----

----- 2029년 12월

31일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⑧ ~ ⑪ (현행과 같음)

⑫ _____

호와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(「지방세법」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「인지세법」 제8조의4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 인터넷지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거나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--- 다음 각 호의
지급수단 중 어느 하나-----

-----.

1. 현금(별지 제1호의2 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납부)
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8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기관 중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
 - 가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

<신 설>

<신 설>

⑬ 제12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장애,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(정보통신망,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·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

른 직불카드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

다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계좌이체

3.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중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기관이 제공하는 가상계좌

4.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 또는 인터넷 지로

⑬ 제1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지급수단 중 어느 하나로 ----

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)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.

⑭ ~ ⑰ (생략)

<신설>

-----.

⑭ ~ ⑰ (현행과 같음)

⑳ 제12항제2호에 따른 전자지급
결제대행기관의 지정·운영, 납부
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
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.